

#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214
----------	------

제출년월일 2012. 2. 22.  
제출자 : 안산시장

## □ 개정이유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 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안전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 □ 주요내용

- 가. “시도의원” 을 “시의원” 으로 하고.....(안 제4조)
- 나. “폐질등급” 을 “장애등급” 으로 하며.....(안 제5조)
- 다. “호적등본” 을 “가족관계 등록부” 로 한다.....(안 별지 제1호 서식)
- 라. 법률근거 조항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 개정조례안 : 불임

##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지방자치법 제34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11. 12. 24 ~ 2012. 1. 13(20일간)

## □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현행조례(전문)

#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무”라 함은」을 「“직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중 「“유족”이라 함은」을 「“유족”이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도의원 당해년도”를 각각 “시의원 해당년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라 함은」을 「“장애”란」으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해”라 함은」을 「“상해”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해”를 “제1호에 따라”로 하고, “의장”을 “의회”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상병”을 “장해 발생”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4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이 규 환
	담당팀장 직위·성명	의회협력계장 이 태 성
	담당자 성명·전화	이 태 성 (행정 2047)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u>동법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 .</p>
<p>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li> <li>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li> <li>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li> </ol>	<p>제2조(정의) ①----- 뜻은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란 ----- .</li> <li>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li> <li>3. “유족”이란 ----- .</li> </ol>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u>시도의원 당해년도</u>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li> <li>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u>시도의원 당해년도</u>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li> <li>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li> </ol>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시의원 해당년도</u> ----- .</li> <li>2. ----- <u>시의원 해당년도</u> ----- .</li> <li>3. 그 밖의 ----- . ----- . ----- .</li> </ol>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 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 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안산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보상금은 일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장애” 란 -----  
----- 장애등급-----  
-----.

②----- “상해” 란 -----  
----- -----  
-----.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의  
----- -----  
-----.

②-----  
-----  
-----  
-----  
----- 따라 -----  
-----  
-----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  
----- 따라 -----  
-----.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생략)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생략)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 ② (생략)

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계좌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각호의 어느 하나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제1호에 따라 -----  
----- 의회 -----.

제10조(심의회 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  
----- 총괄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라 -----  
-----.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  
-----  
--- 범위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15 일				15 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청 구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청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보상금수령 금융 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보상금수령 금융 기관
		상 병 장 소						상 병 연월일시	장해발생 장 소				장해발생 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장해발생 원인 및 발생상황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년 월 일 (청구인)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u>호적등본</u>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u>상병</u>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u>가족관계등록부</u>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u>장해발생</u>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u>지방자치법 제32조의2</u> 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상기자는 <u>지방자치법 제34조</u> 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장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장													
안 산 시 장 귀하				안 산 시 장 귀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보상금청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 내용							
심의회		<결정> <결정이유>					
심의결과		<심의위원 서명>					
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안산시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안산시장      귀하							
안산시장      귀하							

#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214
----------	------

제안년월일 : 2012. 3. 8.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안산시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의 가입대상에 포함되어 업무중·외를 불문하고 사망, 재해, 질병발생 시 보장을 받고 있으나
- 조례에 의한 보상금과 안산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의 이중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보상금을 이중으로 신청시 지급할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조례에 의한 보상금과 안산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에 의한 보험금의 이중수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보험금이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보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안산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금이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② (생략)  <u>&lt;신 설&gt;</u>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안산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금이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